

# “Korana국 외교관의 지위”

## (Korana국 v. Amur국)

Amur국은 석유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이며, 종교적으로 국민의 절대다수가 “아수교”를 신봉하고 있다. Amur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여 2009년 5월 임시과도정부가 성립되었고, 기존 헌법의 적용이 정지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사실상 군부의 비상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7월 15일 Amur국 임시과도정부는 자국에 새로운 국가원수가 취임하고 새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이유로 Amur국에 주재하는 모든 외국대사들은 본국 정부로부터 새로운 신임장을 받아 다시 제정하라고 요구하였다. 군사 쿠데타 이후 Amur국의 국내상황이 비정상적이었으므로 Amur국 주재 외국 외교관들의 역할은 사실상 정지상태였으며, 자국 공관을 관리하는 정도의 기능 밖에 하지 못하고 있었다.

Korana국은 오랜 전부터 Amur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며 수도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있었다. “하운갑”은 2007년 3월부터 Amur국 주재 Korana국 대사로 근무중이었고, 부임 직후인 구 정부시절 신임장을 제정한 바 있었다. “하운갑”은 Amur 정부의 새로운 신임장 요구사실을 본국 정부에 알렸으나, 아래 2009년 9월 25일 밤 체포사건의 발생시까지 새로운 신임장이 도착하지 않고 있었다.

“하운갑”은 Amur국의 남부 지역에 새로운 유전 개발이 유력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하운갑”에게는 “하광률”이라는 1982년 생인 27세의 아들이 있었는데 2009년 6월 말 Uroa국에 소재한 대학을 졸업한 다음 Amur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

었다. “하운갑”은 위 유전개발에 관한 정보를 “하광률”에게 알려 주며 이번에 좋은 기회를 잡아보라고 권고하였다. “하광률”은 Uroa국에서의 유학시절 가깝게 지내던 “병칼리”가 Uroa국에서 유전개발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업을 제안하였다. “병칼리”는 Amur국에서의 유전개발 사업에 크게 관심을 보이며, “하광률”을 자기의 회사의 특별 상담역으로 임명하였다.

“병칼리”의 부모는 모두 Korana국 출신이나 이들은 오래 전에 Uroa국으로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이민을 갔고, “병칼리”는 그후 Uroa국에서 태어났다. Uroa국은 출생지주의 국적법계 국가이고, Korana국은 혈통주의 국적법계 국가라서 “병칼리”는 선천적으로 Korana국과 Uroa국 국적을 모두 부여받고 출생하였다. 현재 32세인 “병칼리”는 그동안 계속 Uroa국에서 거주하였으며, Korana국은 친척방문을 위하여 2차례 단기 방문하였을 뿐이었다. 그런데 “하광률”의 동업 제의를 받은 “병칼리”는 아무래도 이 사업을 하려면 Korana국의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Korana국 여권을 발급받고 Korana인 자격으로 사업비자를 받아 Amur국으로 입국하였다. 독실한 “기수리교” 신자인 “병칼리”는 이번 기회에 Amur국에서의 유전개발사업의 진출도 모색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기수리교” 선교활동도 전개할 의도가 있었다.

Korana국 대사 “하운갑”은 평소 친분이 있던

Amur국 공무원 “탈마루”가 남부 유전지역조사 업무를 비밀리에 수행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하운갑”은 아들 “하광률”과 그의 사업동료 “병칼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며, “탈마루”와 접촉하여 잘 사귀어 볼 것을 권고하였다. “병칼리”는 우선 “탈마루”에 접근하여 여러 가지 개인적 편의를 봐주는 한편 틈틈이 “기수리교”를 선교하였다. 언젠가는 Uroa국으로의 이민을 생각하던 “탈마루”는 의외로 쉽게 “아수교”에서 “기수리교”로의 개종을 결심하였다. 그런데 Amur국의 “종교활동보호법”에 따르면 각 개인은 자신의 원하는 바에 따른 종교를 가질 수 있으나, 다만 “아수교”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른 종교로 개종한다거나 기존의 “아수교”인을 다른 종교로 개종하라고 권고하는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종교활동보호법” 위반자는 모든 관련 사건에서 무조건 단심으로 처벌되며,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상소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드디어 “탈마루”가 유전지역 탐사를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하광률”과 “병칼리”는 그에게 유전탐사 보고서 사본을 넘겨주면 상당한 사례를 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탈마루”가 이를 수락하자 2009년 9월 25일 “하운갑”“하광률”“병칼리” 3인은 시내 유명식당에 “탈마루”를 초대하여 저녁식사를 대접하였다. 이 자리에서 “하광률”과 “병칼리”는 회사 비자금으로 마련한 미화 5만불을 “탈마루”에게 은밀히 전달하고, 보고서 사본을 넘겨 받았다. 그러나 그간의 “탈마루”의 모든 행적은 이미 Amur국 수사당국에 의하여 인지되어 있던 상태였다. 이들이 보고서 사본과 5만불을 교환하고 식당 지하 주차장에서 각자 차를 타고 출발할 무렵 Amur국 경찰이 나타나 이들 전원을 체포하였다.

“하운갑”은 자신이 외국 대사임을 주장하며 체포를 거부하려 하였으나 Amur국 경찰은 현행범임을 이유로 “하운갑”을 강제 연행하였다. 경찰은 “하운갑”이 자국에 부임한 Korana국 대사임을 바로 확

인할 수 있었으나 공범과 같이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일단 조사를 진행하다가 약 4시간 후인 다음 날 새벽 2시경 귀가를 허용하였다. 단 Amur국 수사당국은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하운갑”의 출국을 정지시켜 “하운갑”은 이후 약 4개월간 출국할 수 없었다. “하광률”은 자신이 외교사절의 가족으로서 대사인 아버지와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고 주장하였으나, Amur국 관헌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하광률”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하여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이 결과는 최고심에 의하여도 그대로 확정되어 복역중이다. “병칼리” 역시 뇌물공여 및 “종교활동보호법”상 금지된 행위를 한 이유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역시 복역중이다. 이 사건은 “종교활동보호법” 위반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상소가 허용되지 않아 1심 재판의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Amur국은 2000년 1월 10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개인통보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를 동시에 비준하였다. 단 Amur국은 국내 “종교활동보호법”으로 인하여 규약의 비준 당시 제14조 5항 상소권 보장 조항과 제18조 종교의 자유보장 조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유보를 첨부하였다.

“Amur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이 됨에 있어서 제18조에 규정된 종교에 자유에 관한 사항은 적용을 배제할 것이며, 국내의 ‘종교활동보호법’ 위반자에게는 제14조 5항의 상소권 보장조항의 적용이 국내법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적용될 것임을 선언한다.”

1990년부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이었던 Korana국은 2001년 6월 1

일자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5항 및 제18조에 대한 Amur국의 유보는 규약의 대상 및 목적에 반하는 유보이므로 이를 수락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다만 이 같은 반대선언이 Amur국을 규약의 당사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Korana국의 이러한 선언은 규약의 수탁자인 UN 사무총장에게 문서로써 전달되었으며, UN 사무총장은 이 선언내용을 Amur국을 포함한 모든 관련국들에게 통지하였다. Korana국의 선언에 대하여 Amur국 등 어떠한 국가도 별다른 이견을 표하지 않았다. 한편 Korana국은 개인통보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위 사건이 발생하자 Korana국은 자국 외교관 “하운갑”에 대한 일시 구금 및 출국정지 조치와 그의 가족인 “하광률”에 대한 형사처벌과 수감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국민 “병칼리”에 대한 “종교활동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벌도 양국이 모두 당사국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하운갑” “하광률” “병칼리” 3인과 관련된 국제법 위반행위와 권리침해 사실에 대하여 Amur국의 사과와 아울러 재발방지의 약속 그리고 적절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Amur와 Korana 양국은 이 문제에 관하여 약 4개월간 여러 차례 비공개 외교협상을 벌였으나, 양국 주장은 항상 평행선만 달렸고 타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제까지 알려진 Amur국의 기본 입장은 자국 주재 모든 외교사절에게 본국정부의 새로운 신임장을 발급받아 제정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orana 대사 “하운갑”은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도 2개월 반 이상이 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Amur는 “하운갑”과 “하광률”에 대하여 외교사절과 그 가족으로서의 특권과 면제를 인정할 의무가 없으며, “종교활동보호법” 관련

사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비준시 관련 조항을 유보하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협상과정에서 Korana국과 Amur국은 이 이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 쟁점에 대한 주장과 반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구체적 내용은 아직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협상을 통한 이 사건의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Korana국은 2010년 5월 15일 Amur국을 ICJ에 일방적으로 제소하였다. Korana국은 ICJ에 대한 제소 신청서에서 재판소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언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 (1) Amur국은 Korana국 대사 “하운갑”을 약 4시간 동안 구금하고 이후 약 4개월간 출국정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위반하였음.
- (2) Amur국은 “하운갑”의 아들 “하광률”을 형사처벌하고 현재도 수감하고 있음으로써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에 Amur국은 “하광률”을 즉각 석방하여야 함.
- (3) Amur국은 Korana 국민 “병칼리”를 선교행위를 이유로 처벌하고 또한 1심 재판결과에 대한 상소권을 부인함으로써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하였음.
- (4) Amur국은 위와 같은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Korana국에 사과하고 재발방지의 보장과 함께 국제적 기준에 합당한 적절한 손해배상금 지불하여야 함.

Korana국은 2004년 아무런 조건없이 ICJ 규정 제36조 2항 선택조항을 수락한 바 있다. Amur국은 1996년 3월 1일 ICJ 규정 제36조 2항의 선택조항을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수락한 바 있다.

“Amur국은 ICJ 규정 제36조 2항에 따라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고 있는 국가와의 사이에서 1996년

3월 1일자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 분쟁사건에 대하여 ICJ의 재판관할권을 수락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국제적 분쟁해결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수락선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Korana국의 재판 신청을 받은 ICJ는 이 제소사실을 ICJ 규정 제40조에 따라 즉각 Amur국에 통보하였으며, 아울러 ICJ에 출석할 자격을 가진 모든 국가에게도 통고하였다. ICJ는 “하광률”과 “병칼리”가 현재 구속중임을 감안할 때 가급적 신속한 재판진행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ICJ는 양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만약 Amur국이 이 사건에 대한 ICJ의 관할권 성립 여부를 다투려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선결적 항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첫 번째 항변서에서 그 내용을 함께 진술하여 본안 사건과 동

시에 심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ICJ는 제소국인 Korana국에게는 2010년 6월 20일까지, 피소국인 Amur국에게는 2010년 7월 20일까지 각각 준비서면(memorial)과 항변서(reply)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다. 최종적인 구두변론은 2010년 8월 28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Amur국과 Korana국은 모두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을 원당사국으로 비준한 국가들이다. 또한 Amur와 Korana 양국은 모두 1985년 이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의 당사국들이다. Amur와 Korana 양국은 이들 조약에 대하여 별다른 유보를 첨부하지 않았다.